

# 건축학과 전공 배정 지침

제정 2017. 10. 17.

## 1. 목적

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학과 배정 규정에 의하여 2016학년도부터 건축학과 통합과정으로 입학한 학생(정원 외 입학생 포함)의 전공(건축공학전공, 건축학전공) 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2. 배정대상

가. 건축학과 통합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은 4개 학기 이수 후 예외 없이 전공(건축공학전공, 건축학전공) 배정을 신청해야 한다.

나. 배정을 신청하는 학생은 다음 수강조건을 만족해야 한다.

- ① 총 65학점이상 이수
- ② 통합과정 공통 전공 필수과목의 8과목 이상 이수
- ③ 교양과목 중 아래 과목을 이수

(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)

- 수학 및 연습1
- 공학수학1
- 공학수학2
- 물리학1(또는 고급물리학1), 물리학실험1

(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)

- 수학 및 연습1 또는 고급 수학 및 연습1
- 수학 및 연습2 또는 고급 수학 및 연습2
- 공학수학1
- 물리학1(또는 고급물리학1), 물리학실험1

다. 4개 학기이수 후에도 특별한 사유(군 입대, 질병휴학 등) 없이 배정신청을 하지 않거나, 나. 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후순위로 하여 배정한다.

## 3. 배정시기

학과 전공 배정은 정규과정 매 학기말 종강 이후에 실시하며 그 시기는 별도로 정한다.

## 4. 배정신청 방법

- 가. 2항의 가. 조건을 충족한 전공 배정 대상 학생들은 미리 공지되는 학과 전공 배정 신청기간 동안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학과 전공 배정 신청서를 제출한다.
- 나. 전공배정 신청 요건이 만족되었으나 신청을 연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전공배정 연기 신청서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배정연기 사유의 적절성(군입대, 질병 휴학 등)을 학사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연기를 승인한다. 단, 배정연기가 불승인된 경우 배정신청을 연기할 수 없다.

## 5. 전공배정원칙

- 가. 원칙적으로 해당학기 배정신청자 총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건축공학전공과 건축학전공 진입의 비율이 1:1이 되도록 신청자의 사정 성적순에 따라 희망대로 배정한다.
- 나. 한쪽 전공의 신청자가 총 신청자의 5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정 성적순으로 해당 전공에 초과배정을 허용할 수 있다. 다만, 한 전공의 배정인원은 총 신청자의 60%를 초과할 수 없다.

## 6. 성적 사정원칙

- 가. 공통전공필수과목 11개 과목에 대한 총 학점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신청자가 공통전공필수 11개 과목을 모두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강하지 않은 공통전공필수과목의 성적을 0점으로 하여 11개 과목에 대한 총 학점을 기준으로 한다.
- 다. 공통 전공필수과목의 총 학점이 동일할 경우 1) 공통 전공필수과목을 더 많이 수강한 자, 2) 교양 및 전공 선택을 포함한 전체 성적이 더 우수한 자를 우선순위로 하여 배정하며, 위의 규정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과 학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배정한다.
- 라. 국내·외 타 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은 학과전공 배정 신청 마감 시까지 교무처에서 인정한 성적만 반영한다.
- 마. 전과(전출) 지원자가 타과에 전공진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축학과 내에서 전공을 임의로 배정한다.
- 바. 전공배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학기의 계절수업 성적은 포함하지 않는다.

## 7. 전공 재배정

- 가. 상기의 전공배정 절차를 통하여 전공이 결정된 학생들은 1회에 한하여 전공배정 후 2개 학기 이수 후 전공 재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- 나. 신청자의 사정 성적순으로 전공 재배정을 허용하며, 전공별 허용인원은 5명 이내로 학사위원회 심의 후 변경 승인 한다.
- 다. 성적 사정원칙은 위의 6항을 따른다.

## 8. 예외 규정

- 가. 학사편입학(군위탁 포함)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공을 배정한다.
- 나. 자유전공학부 전공 진입자 및 전과(전입)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공을 배정한다.
- 다. 본 학과 다전공(복수전공 및 부전공) 승인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공을 배정한다.
- 라. 정원외 입학생중 글로벌인재(외국인)특별전형 및 정부초청(외국인) 전형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공을 배정한다.

## 9. 기타 사항

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건축학과 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정한다.